

의안번호	2211049
의 회 인	성일중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계번호	25D339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에 따른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전쟁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 2. 전쟁희생자 또는 전쟁희생자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사·결정 및 지급 3.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4. 그 밖에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심의를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40조의3(보상 등)	국가는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전쟁희생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함	의무규정
3	안 제40조의7(재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5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전 쟁 희 생 자 보 상 심 의 위 원회설차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0조의7(재심의)		
3	안 제40조의3(보상 등)	보상금 등	
4	안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2. 상세 사유

가.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7)

- 안 제40조의2는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각각 10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와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간 회의개최 횟수, 보상위원회 지원 조직 존재 여부 및 지원업무 수행비용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¹⁾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전쟁희생자 보상 대상은 진실규명이 완료된 “민간인 집단 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의 희생자임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2021.5.27.) 후 진상규명활동(3년+연장 1년)을 하였는데, 그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로 종료되었고,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위한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 26일까지임

[표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기+2기) 진실규명 사건처리 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건수	배정건수 ¹⁾	종결사건				조사중지
			진실규명 ²⁾	규명 불능	각하	취하·이송 ³⁾	
합계	31,143	32,099 (100%)	20,359 (63.4%)	1,206 (3.76%)	5,842 (18.2%)	2,561 (8.0%)	2,131 (6.6%)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417	421	50	37	292	23	19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7,897	18,397	12,835	853	1,565	1,779	1,365
적대세력 관련 사건	5,585	5,870	4,642	129	624	386	89
인권침해·조작 의혹·확정판결 사건	3,501	4,068	2,322	171	804	264	507
역사적 중요한 사건	208	219	44	14	9	3	149
3·15의거 사건	492	493	466	—	1	24	2
기타	3,043	2,631	—	2	2,547	82	—

주 1)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 건수. 조사 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2) 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를 포함함

3) 신청 사건 중 취하됐거나 여순사건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을 의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은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건만 고려하더라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12,835건)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4,642건)에 이르고, 각 사건을 희생자 인원으로 환산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관련 법률이 제정(2013.12.5.)된 이후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 제100차 회의까지 총 794건의 관련자 심의를 하였음

[표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 현황: 2014.10.13.~2024.7.31.

(단위: 건)

구분	관련자 심의							
	계	사망	후유사망	상이	구금	해직	수배	학사경고
심의 건수	794	1	6	182	551	31	8	15
인용	680	1	—	105	535	20	8	11
기각	114	—	6	77	16	11	—	4

자료: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2025.6.20.) p3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25년 5월말 기준 총 107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표 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14.10.~2025.5.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심의 건수	2	11	12	11	11	11	58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소계
심의 건수	7	11	10	9	8	4	49

자료: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심의기간(2014.10.13.~2024.7.31, 9년 8개월), 심의건수(같은 기간, 총 794건),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연평균 약 10회)을 고려할 때, 이보다 희생자 규모가 막대한 전쟁희생자의 심의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연도별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현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2025.5.26.)되어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존속기한(2025.11.26.)만 남겨두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음

나. 보상 등(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12)

- 안 제40조의3²⁾은 국가로 하여금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전쟁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안 제40조의12³⁾는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일실효익 산정에 필요한 전쟁희생자 개개인의 피해 유형(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피해 정도, 피해 당시의 연령,

2) 제40조의3(보상 등) ① 국가는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전쟁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전쟁희생자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3)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 시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고,
위자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전쟁희생자의 가족관계 등이 조사될 필요가 있음

- 현시점에서는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